



제 439회 국회 (정기회)
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신설 등〉
■ 우재준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8726호)

2026. 9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박희석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신설 등	2
※ 참고자료	8
1. 완충저류시설 사업설명	8

I. 제안경위

2026년 4월 30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,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.

특히,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절한 운영·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.

그러나 현행 「물환경보전법」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,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.

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,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(안 제21조의4제8항·제9항,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1. 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 준수 의무 신설 등

개정안은 ①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②운영기준 미준수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③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4 및 제82조제1항제2호의3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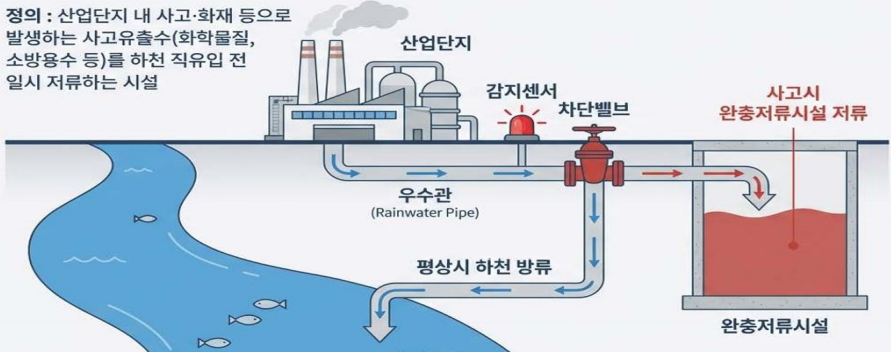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안
제21조의4(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의4(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</u>

현행	개정안
⑧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<u>설치기준 및 운영</u>,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, 개선계획의 수립·시행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2의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7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<u>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 ⑩ ----- <u>설치기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8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 <u>2의3. 제21조의4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완충저류시설이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·폐수

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시설로, 사고유출수 등의 하천 직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음¹⁾.

[완충저류시설 개요]

사업근거 및 목적	지자체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,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등의 하천 직유입 차단 등을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·운영토록 규정(「물환경보전법」제21조의4, 법정 의무시설)
정의: 산업단지 내 사고·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(화학물질, 소방용수 등)를 하천 직유입 전 일시 저류하는 시설  주요 기능 사고대응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예방 비점오염 저감 평상시 초기우수를 저류·처리하여 하천 수질 개선 ▶ (운영체계) 사고유출수 발생 → 우수관 → 감지센서(경보) → 하천방류 차단(차단밸브) → 완충저류시설 → 공공처리시설 유입·처리 → 방류	
설치대상 (공업지역 산업단지)	① 면적 150만㎡ 이상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 ③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등에 위치 ④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·보관·저장·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(㎡)당 2kg 이상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운영 의무와 설치·운영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,

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⁾.

1) 2026년 4월 기준 40개소가 운영 중이고, 51개소가 설치 중임. 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2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(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관리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

최근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유출수와 초기우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므로 사고 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나,

현행법에는 운영기준 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, 위반 시 조치명령이나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개정안은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, 미준수 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,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,

완충저류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, 이를 통하여 비상 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참고로,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의 적정 운

물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(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이라 한다)는 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·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(緩衝貯留施設)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완충저류시설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~⑥ (생략)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⑧ 완충저류시설의 용량 산정 기준 등 완충저류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,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, 개선 계획의 수립·시행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 및 제재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또한, 조치명령 미이행 시 부과되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완충저류시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이고, 고의적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행정상 의무 이행 확보 성격이 강하므로 벌금이나 징역 등 벌칙이 아닌 과태료가 적절하고,

완충저류시설이 가지는 공공수역 오염확산 차단기능을 고려할 때 공공안전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「물환경보전법」상 과태료 최고 수준인 1천만원 이하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[물 환경보전법 내 제재규정 비교]

구분	해당 내용(법조항)	위반시 벌칙·과태료
완충저류시설	▸ 설치의무(제21조의4제1항)	-
	▸ 설치·운영기준(제21조의4제8항)	-
폐수배출시설	▸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(제35조제2항)	위반 시 ³⁾ 과태료 1천만원 이하
측정기기	▸ 운영·관리기준(제38조의3제2항)	조치명령 불이행 ⁴⁾ 벌금 500만원 이하
	▸ 운영·관리기준 미준수 시 조치명령(제38조의4제1항)	
공공폐수처리시설	▸ 유지·관리기준(제50조제2항)	-
	▸ 유지·관리기준 미준수시 조치명령(제50조제4항)	조치명령 불이행 ⁵⁾ 1년이하 또는 1천만원
비점오염저감시설	▸ 설치의무(제53조제5항)	설치의무 위반 ⁶⁾ 1년이하 또는 1천만원
	▸ 운영·관리기준(제53조제6항)	-
	▸ 운영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개선명령 등(제53조제7항)	개선명령 등 불이행 ⁷⁾ 1년이하 또는 1천만원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문 의 처

02)6788-5541

3) 「**물환경보전법**」 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3. 제35조(방지시설의 설치·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)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
3의3. 제38조의3(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·관리기준)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
4) 제7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38조의4(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)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5)6)7) 제7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1. 제50조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 등)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

12. 제53조(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·준수사항·개선명령 등)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

13. 제53조(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·준수사항·개선명령 등) 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·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

참고자료

완충저류시설 사업설명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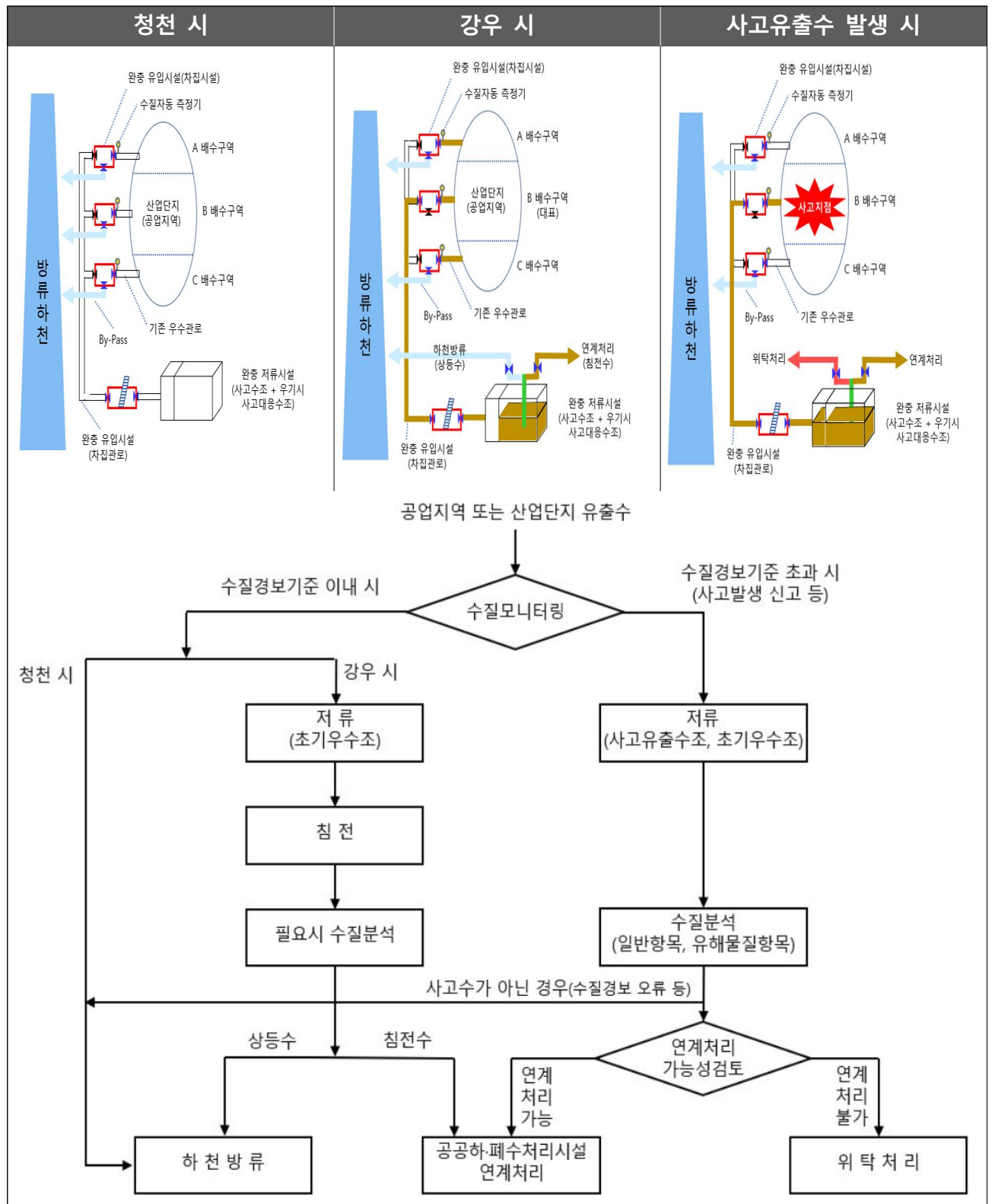
사업근거 및 목적	지자체 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,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등의 하천 직유입 차단 등을 위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·운영토록 규정(「물환경보전법」제21조의4, 법정 의무시설)
	정의 : 산업단지 내 사고·화재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유출수(화학물질, 소방용수 등)를 하천 직유입 전 일시 저류하는 시설 주요 기능 사고대응: 오염물질의 하천 차단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예방 비점오염 저감: 평상시 초기우수 저류·처리하여 하천 수질 개선 ▶ (운영체계) 사고유출수 발생 → 우수관 → 감지센서(경보) → 하천방류 차단(차단밸브) → 완충저류시설 → 공공처리시설 유입·처리 → 방류
설치대상 (공업지역 산업단지)	① 면적 150만㎡ 이상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 ③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등에 위치 ④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·보관·저장·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(㎡)당 2kg 이상

□ 사업별 조감도



□ 완충저류시설 운영체제도

- 청천 시, 강우 시, 사고유출수 발생 시 등을 구분하여 운영

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